

의안번호	제 174 호
의 결 연 월 일	2007년 11 월 21 일 (제 266 회)

## 충청북도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지 사
제출연월일	2007년 11월 12일

법무통계담당관 심사필

## 충청북도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174
------------	-----

제출연월일 : 2007년 월 일  
제 출 자 : 충 청 북 도 지 사

### 1. 제안이유

- 100여년 동안 사용한 지번방식의 주소제도가 2012년부터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 방식의 주소체제로 전면 개편토록 하는 도로명 주소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 2. 주요내용

#### 1. 도로구간 및 도로명의 조정에 관한 사항

- 도지사가 2개 이상의 시 ·군에 걸쳐 있는 도로의 현황을 관리하고 해당 시장 · 군수에게 통지토록 함(안 제3조)
- 2개 이상의 시 ·군에 걸쳐 있는 도로에 대한 도 새주소 위원회의 심의 및 결과통지 절차와 처리기한을 규정 (안 제4조)

#### 2. 도로명주소의 사용촉진에 관한 사항

- 관련사업에서도 도로명주소를 통일적으로 사용토록 함 (안 제5조)
- 도로명주소 홍보물의 제작 · 배포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하여 제작할 홍보물의 종류를 명시함(안 제6조)

- 도지사에게 도로명주소에 대한 교육계획 수립·실시 또는 협조, 생활화 촉진시책 추진 등의 의무를 부여함  
(안 제7조~제8조)

**3. 새주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 새주소위원회의 구성, 기능,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9조~제15조)

**3. 제정근거 :**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법령

**4. 조례안 :** 붙임

**5. 관계법령 :** 붙임

# 충청북도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도로명사업 등에 관하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에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2장 도로구간·도로명의 조정

**제3조(협의대상 도로의 현황 제공)**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영 제6조제5항 및 제7조제3항과 관련된 2개 이상의 시·군에 걸쳐 있는 도로의 현황(명칭, 구간, 폭, 설치·관리자, 관련 시·군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도로 현황에 관한 자료를 매년 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작성 기준연도의 다음연도 1월 말까지 해당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제1항의 도로의 현황을 변경하고자 하는 계획이 연도 중에 확정 또는 공고되거나 제1항의 도로의 현황이 통보된 내용과 다른 것을 발견한 때에는 계획이 확정 또는 공고된

날이나 통보된 내용과 다른 것을 발견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도지사는 제2항의 통보를 할 경우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협의를 신청하도록 함께 안내하여야 한다.

**제4조(도로구간의 설정 등)** ① 도지사는 관할 시장·군수로부터 영 제6조제5항 및 제7조제3항에 따라 2개 이상의 시·군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구간 설정, 도로명의 부여·변경을 위한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또는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제9조에 의한 충청북도 새주소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연장, 폭, 기·종점 및 도로구간에 관한 사항
2. 도로에 대한 도로명의 부여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3. 도로의 도로구간의 설정 및 도로명의 부여·변경에 관한 시장·군수의 의견
4. 도로의 도로구간의 설정·변경, 도로명의 부여·변경에 관한 지역적 특성, 역사성, 위치예측성, 도로명주소의 영속성 등에 대한 도지사의 의견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에 따라 충청북도 새주소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심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시장·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3장 도로명주소의 사용 촉진**

**제5조(도로명사업에 의한 도로명의 사용의무)** 도지사가 관리하는 모든

도로의 명칭(노선명)은 도로명사업에 의하여 부여된 도로명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명사업에 의하여 부여한 도로명의 도로구간이 개별 법령에 의하여 개설된 도로의 도로구간을 포함하지 못하는 경우는 다른 명칭(노선명)을 사용할 수 있다.

**제6조(도로명주소의 홍보)** 도지사는 법 제17조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홍보하기 위하여 손수건, 휴대용 화장지, 부채, 자, 저금통, 달력, 접지형 지도, 컴퓨터용 마우스패드 등의 홍보물을 제작하여 관할 주민에게 배포할 수 있다.

**제7조(도로명주소의 교육)** ① 도지사는 민방위·예비군교육, 각종 단체의 회의·행사·교육 등에 도로명주소에 대한 교육이 실시 되도록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충청북도 교육감과 협의하여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도로명주소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문교사 지원 등 교육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한다.

**제8조(도로명주소의 생활화 시책 추진)** ① 도지사는 도로명주소의 생활화촉진을 위해 법 제22조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제반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각종 버스정류장 및 철도역사(도시철도 역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여객자동차터미널, 여객터미널, 공항 등 다중이용시설에 새주소안내도 부착, 새주소안내표지판 설치 등 새주소 안내시설 설치
2. 각종 버스정류장 및 철도역사 등의 위치표시체계에 도로명주소방식 도입

3. 관내 산하기관, 민간단체 등의 도로명주소 생활화 촉진 사업 지원
4. 충청북도 단위의 도로명주소안내도의 제작·보급
5. 그밖에 도지사가 도로명주소의 생활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장 충청북도 새주소위원회 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영 제25조에 따라 설치되는 충청북도 새주소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정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이 아닌 자가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1. 도로명사업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
2. 도로명사업 및 도로교통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자
3. 충청북도의 특성과 역사, 지리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0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②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때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충청북도의 집행계획과 연도별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2개 이상의 시·군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구간의 설정·변경 및 도로명의 부여·변경에 관한 사항
3. 충청북도 도로명주소 통합센터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4. 도로명주소의 사용 촉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로명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도지사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소집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자순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간사 등)**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팀의 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 담당자가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하여 회의사무를 처리한다

③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15조(자료의 제출요구 등)**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6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지 제1호서식](제3조제3항 관련)

도로구간 및 도로명 조정 신청서			처리기간 37일
대상도로	기점	○○시·군 ○○읍·면 ○○동·리 ○○번지	
	종점	○○시·군 ○○읍·면 ○○동·리 ○○번지	
	너비(m)		
	연장(m)		
도로명현황	명칭		
	부여일자		
	부여사유		
도로구간 설정 및 도로명 부여·변경에 관한 시장·군수의 의견			
<p>「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5항 및 제7조제3항에 따라          도로구간(도로명)의 협의를 신청합니다.</p>			
첨부 : 관련 도면 ○○부 년 월 일			
신청자 : ○○ 시장·군수 (직인)			

210×297mm(신문용지 54g/m<sup>2</sup>(재활용품))

## 관계법령 발췌

###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제17조(도로명사업 지원 조례 제정)** 지방자치단체는 도로명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도로명주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로명시설의 설치 · 유지 관리 · 손해배상공제가입 · 활용 및 홍보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 할 수 있다.

###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도로구간의 설정)** ①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도로구간을 설정 하여야 하는 도로는 폭과 길이에 따라 대로 · 노(路) · 길로 구분한다.

②제1항에 따른 도로별 구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 등이 지형여건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로 : 도로의 폭이 40미터 또는 왕복 8차로 이상인 도로 중 도로의 길이가 4킬로미터 이상인 도로
2. 노(路) : 도로의 폭이 12미터 이상 40미터 미만 또는 왕복 2차로 이상 8차로 미만인 도로중 도로의 길이가 2킬로미터이상인 도로
3. 길 : 대로와 노 외의 도로

③도로구간은 도로의 폭 · 방향 · 교통흐름 등 도로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설정하되 도로구간의 수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④도로구간은 강 · 하천 등의 지형 · 지물, 시설물, 행정구역(시 · 군 · 구와 읍 · 면을 말한다)의 경계 등을 고려하여 그 경계를 설정 하여야 한다.

⑤시장등은 도로가 2개 이상의 시 · 군 · 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특별시장 · 광역시장 ·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 · 도지사”라 한다)와, 2개 이상의 시 · 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과

도로구간의 설정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도로구간을 설정하기 위한 도로망의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도로명의 부여 등)** ① 시장등은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라 도로명을 부여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제26조제1항에 따른 시·군·구 새주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시장등은 도로명을 부여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지역적 특성, 역사성, 위치 예측성, 영속성, 지역주민의 의견 및 지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2개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는 도로에 도로명을 부여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시·도지사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에 도로명을 부여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과 각각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시장등 사이 또는 시·도지사 사이에 동일한 도로명을 부여하거나 동일한 도로명으로 변경하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도로명을 도로명판에 표기하는 경우에는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여야 한다.

⑤ 시장등은 도로명시설의 설치가 완료된 후 3년 이상의 기간으로서 시·군·구 조례(행정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 조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후 도로명주소의 활용도와 편리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해당 도로명을 주소로 사용하는 자 중에서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자가 이미 부여된 도로명의 변경을 요구하는 때에는 해당 도로명을 주소로 사용하는 자 중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도로명을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도로명의 부여 또는 변경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시 · 도새주소위원회의 설치 등)** ①법 제5조 ·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시 · 도 집행계획의 수립,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 및 도로명 부여에 관한 내용 등을 심의하고 도로명주소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 · 도지사 소속하에 시 · 도새주소위원회(이하 "시 · 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시 · 도위원회는 위원장 ·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시 · 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정한다.

④위원은 도로명사업과 관련되는 기관의 관계공무원과 도로명사업 및 도로교통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 · 도지사가 지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⑤시 · 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 · 도의 집행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2개 이상의 시 · 군 · 구에 걸쳐 있는 도로구간의 설정 · 변경 및 도로명의 부여 · 변경에 관한 사항
3. 시 · 도통합센터의 운영 ·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로명사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 · 도지사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⑥시 · 도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2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4조 중 "중앙위원회"는 "시 · 도위원회"로, "행정자치부장관"은 "시 · 도지사"로 본다.

⑦시 · 도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 ·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